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OSH Research Brief

2020년 제25호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발행인 고재철
주 소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문의 연구기획부 052-703-0813
발간번호 2020-산업안전보건연구원-659

제25호

근로자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규모별 건강검진 실시현황과 기능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 제목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2019)

연구책임자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이명진 사무국장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나민오 차장



I. 서론

건강검진 제도는 업무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과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현황과 운영방식, 건강검진 미실시 원인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건강검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연구내용

1. 건강검진 참여 실태 및 운영 현황

근로자 2,504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참여 실태와 검진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건강검진의 주기(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연 1회)를 고려하여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이 97.7%, 50~299인 93.9%, 5~49인 92.2%, 5인 미만 79.3%가 건강검진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참여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자의 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검진 참여율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남성

94.2%, 여성 91.8%), 연령이 젊고(39세 미만), 근속연수(4년 이하)와 직위가 낮을 수록 검진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검진의 운영 및 관리 현황은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회사의 노력(검진안내, 결과설명)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강제성의 인식(내부규정 반영, 과태료 인식)을 조사하고 검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건강검진 참여안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사업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결과설명은 검진에 참여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검진 결과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1.4%가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 제도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검진휴가 부여, 참여 의무 등의 사내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강검진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반수의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효 응답자 2,43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회사부담(유급휴가+출장검진+근무중 외출) 62.1%, 개인부담(무급휴가, 휴일검진, 본인 연차) 34.6%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2. 건강검진 미수검 원인 조사

실태조사 참여 근로자 중 건강검진 미수검자 167명에 대한 소속 사업장의 규모, 미수검 원인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미수검자 근로자가 속한

[표 1] 건강검진 참여 방법 및 소요시간에 대한 부담주체

구분	내용	응답자	비율	분야별 응답자수	분야별 응답자비율
① 회사부담	유급휴가 부여	395	16.2%	1,514	62.1%
	출장검진 이용	414	17%		
	근무시간 중 검진기관 방문	705	28.9%		
② 본인부담	무급휴가 부여	107	4.4%	844	34.6%
	연차휴가 사용	215	8.8%		
	휴일 검진	522	21.4%		
③ 기타	그 외 기타방법	80	3.3%	80	3.3%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62.3%(104명), 50~299인 31.1%(52명), 300인 이상 6.6%(11명)으로 나타났다. 미수검 사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검진시간 미부여 34.1%, 안내 부족 28.1%, 사업주의 범위반 18%, 검진 불필요 18% 순으로 나타났

다. 개별 사유로는 검진을 실시하는지 몰라서가 42명(25.1%)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시간이 부족해서가 36명(21.6%), 사업주가 시켜주지 않아서가 30명(18%), 검진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25명(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표 2] 근로자 건강진단 미수검 원인

구분	내용	응답수	응답비율*	분야별 응답수	분야별 응답비율
① 시간보장	업무 인력 부족	16	9.6%	57	34.1%
	업무 시간 부족	36	21.6%		
	휴가 미부여	5	3%		
② 안내부족	검진하는지 몰라서	42	25.1%	47	28.1%
	건강검진이 권리인지 모름	5	3%		
③ 범위반	사업주가 시켜주지 않음	30	18%	30	18%
	필요하지 않음	25	15%		
④ 불필요	결과를 못믿음	1	0.6%	30	18%
	결과가 무서움	4	2.4%		
	거리가 멀어서	3	1.8%		
⑤ 기타	비용부담이 있어서	8	4.8%	14	8.4%
	그 외 사유	3	1.8%		

* 문항에 대한 복수응답(178건)에 따라 응답비율(응답수/설문자수)로 표기함

3.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점

(1)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사업주 부담 명시(유급휴가 또는 금전 보상제 도입)

건강진단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근로에 수반되는 업무상 질병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주가 검진을 제공해야 할 의무 주체이고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

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도입과 업무대체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휴일검진에 대한 금전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건강검진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미수검 사업장에 대한 벌금 부과

현행 법은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미수검 인원에 대한 과태료(위반 횟수별 금액 차등)를 부과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20만원(4인x5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현행 과태료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를 담보하기에 재제 효과가 매우 낮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미 실시 하는 경우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최대 5,000유로(약 750만원), 일본의 경우 50만엔(약 500만원) 수준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건강검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만족도 제고

실태조사 결과 건강검진에 참여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검진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수검 사유에서도 건강검진의 결과에 대한 불신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검진항목에 대한 만

족도 제고와 검진결과 설명 및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한다.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된 콜레스테롤 검사(연령에 따라 4년 주기로 변경)를 근로자 건강검진에 반영하고, 뇌심혈관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직무스트레스 검사 등을 새로운 항목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후관리의 강화 방안으로 일본의 대사증후군 관리제도와 독일의 체크업35 제도를 소개하였다.

III.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원인을 탐색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검진휴가를 부여(또는 금전보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위반시 행정적 재제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밝히고 선진국의 재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건강검진의 검진항목 보완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투고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